

費用的 確保가 우리區 財政 形便상 어려운 점도 있다고 思料되나 關係 部署에서는 現場의 實情을 綿密히 把握하여 請願인들의 要求가 반영될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우리 委員會에서는 配付해드린 意見書를 採擇하여 本會議에 부의 하도록 審査하였습니다.

마포구 하중동 58-2부터 상수동 282-1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請願에 대한 意見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 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대한건의서

본 請願은 열악한 환경조건과 불편한 住居生活를 解消하기 위하여 마포구 하중동 58-2에서부터 상수동 282-1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請願으로 동 지역은 1995년 2월 13일 마포구 고시 95-3호로 폭 6m, 길이 170m의 도시계획시설인 道路로 地籍告示된 지역으로 사업소요 경비만 확보되면 工事が 施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麻浦區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산적해 있고 工事優先 順位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區 財政 형편으로도 동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請願인들의 요구사항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現場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檢討하여 청원인들의 要求가 反映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意見書 內容대로 採擇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審査報告를 마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韓賢惠 金世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都市建設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意見書의 內容과 같이 우리 區議會 意見으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5일간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熱과 誠을 다해 회부된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처음 이 자리에서 會議進行함에 부족한 이 사람을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議員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즈음 환절기여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定期會에 대비한 事前準備도 충실히 하셔서 활발한 論議와 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定期會가 되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34회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1分 散會)

○出席議員(29人)

韓賢惠	庾應鳳	金星煥
李應洵	李天揆	金順錦
裊相大	金英植	金鍾烈
沈載昶	朴映吉	鄭聖鈺
洪性煥	朴東七	韓大運
鄭晚植	朴相洙	金東暉
蔡在善	金世昌	金忠煥
李麗杓	金孝喆	李仁求
庾東均	金裕顯	尹明奎
韓守均	權五範	

○出席公務員

區廳長	盧承煥
副區廳長	金賢鍾
總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文忠實
市民局長	尹丙汝
都市整備局長	孫時翼
建設局長	申東文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課長	李春基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1. 9.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9.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 9. 22.

다. 상정일자 : 제3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5. 1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승권 세무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인쇄수수료 신설
 - 문서의 열람 1건 1회 : 100원
 - 문서의 정정 1건 : 100원
 - 문서의 복사 1매 : 1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즉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인쇄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수료는 그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의 수수료 원가계산 조사결과 평균 520원으로 산출된 것이 정확한 계산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실제적인 비용산출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수수료가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현행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문서의 열람, 복사 등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일자 : 1995. 9. 21.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골자

-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 및 인쇄수수료 신설
 - (1) 문서의 열람 1건 1회 : 100원
 - (2) 문서의 정정 1건 : 100원
 - (3) 문서의 복사 1매 : 100원

3. 개정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4호)제17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0. 29. 대통령령14408호)제21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으로 하고, 동호중 “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란 다음에 “파.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파.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1건 1회	100원	
(2) 문서의 정정	1건	100원	
(3) 문서의 복사	1매당	1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			
(신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파. 개인정보공개 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1건1회 1건 1매당	 100원 100원 100원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11.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 10. 1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95. 10. 13.
- 다. 상정일자: 제3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춘기 총무과장)

- 가. 제안이유.
호적법시행규칙(1995. 6. 5. 대법원규칙 제1369호)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종전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부과토록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던 것이 19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배치되었던 종전규정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95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등이 근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까지 적용된 과태료부과기준은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채재선 위원): 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면제규정 제4조3항에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 데,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태료부과를 면제해 줄 소지는 없는가?
- 답변요지(문엽승 시민봉사실장): 현재까지 구청장이 면제해 준 실적은 없고, 이 조항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구청장이 면제해 주는 규정임.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호적법시행규칙이